

제 6 장

기타 사례



제6장 기타 사례

사례 55

2018서울조정261·262, 263·264(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모 관광지의 안전조치를 비판한 보도에 대해 조정신청 취지를 PR보도 형식으로 반영한 사례

보도내용

- 종합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각종 화재사고에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고 보도하면서, 유명 관광지인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이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 및 승선신고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불법 운항한다고 지면 및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해당 관광지를 관리, 운영하는 법인인 신청인은 섬을 왕복하는 여객선은 관련법에 의해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할 필요가 없고, 구명동의에 대한 안내 방송과 구명동의 착용법에 관한 동영상 상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박의 운항거리와 운항시간이 짧기 때문에 법규상 승선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섬을 왕복하는 여객선은 소형 유선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할 필요가 없고, 구명동의에 대한 안내 방송과 구명동의 착용법에 관한 동영상 상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박의 운항거리와 운항시간이 짧기 때문에 법규상 승선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일부 사실 확인을 위해 2차 심리로 속행되었고,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 관련 부분을 삭제, 수정하였다. 또한 심리 이전 양 당사자 간 협의하여 신청인 관련 PR보도가 게재되어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 후 보도문

경기도 ○군과 맞닿은 A섬(사진). ○강 상류 강 안에 있는 A섬이 벚꽃과 공연이 어우러진 봄나들이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A섬은 요즘 벚꽃이 만발했다. 섬 중앙 잣나무 길에서 동쪽으로 걷다 보면, 강변을 따라 일렬로 늘어선 400m 구간 수양벚나무 군락지가 펼쳐진다. 일반적인 벚나무(왕벚나무)와 다르게 아래로 죽 늘어뜨린 가지 사이로 새하얀 벚꽃이 흐드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다. [중략]

A섬은 ‘안전 관광’에 앞장서고 있다. ○ 선착장~A섬 900m 구간 ○강을 운항하는 선박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승무원이 선박 크기별로 3~5명씩 동승한다. A섬 전 직원 100여 명은 ○소방서 ○119센터와 연계해 정기적으로 ‘응급환자 대응 및 소방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A섬 대표는 “선박에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장비가 갖춰져 있고 모든 직원이 화재 초기 진화 및 응급환자 응급처치 요령, 사고 대처요령 등을 익혀 안전한 관광 실천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사례 56

2018대전조정11·12 정정·손배청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비판하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해당 업체 대표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지역 인터넷신문사인 피신청인은 폐기물 처리시설 시행사인 신청인 회사가 산업폐기물매립장 설치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 명단을 위조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으며, 폐기물매립장 사업 승인은 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취지로 2차례에 걸쳐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참석자 명단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행정기관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도 없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주민설명회에서 참석자 명단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정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
-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의 입장을 충분한 분량으로 보도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고, 피신청인의 대표이사 인터뷰를 게재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조정대상보도1

A시민단체는 15일 검찰청에 시장과 시행사 대표 및 전 대표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발했다.

A시민단체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년 ○월 ○일 B면사무소에서 시 ○과가 개최하고 D시행사가 주관해 열렸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단의 서명이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A시민단체 모 위원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포함된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단에 나와 있는 47명 중 16명은 면담 인터뷰, 5명은 통화 인터뷰를 진행해 확인과정을 거쳤다”며 “서명자 총 21명 중 13명이 본인이 한 서명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서명자중 2명은 설명회에 참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중략]

이번 사문서 위조 고발 주체인 A시민단체가 시와 시행사의 대응을 예의주시 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시와 시행사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정대상보도2

A시민단체는 21일 시청 광장 로터리에 설치되어 있는 농성 천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인허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중략]

A시민단체 집행위원장은 “이러한 의혹 풍년인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을 승인한 행위는 업체에 특혜를 주는 행위에 다름아니다”라며 시, 도, 행정청을 강하게 비난하고 “여러모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도 승인이 이루어진 행위는 폐기물처리업체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주는 행위지만, 시민들에게는 환경재앙을 떠넘기는 행위”라며 이 감사 청구의 목적이 ‘공익’에 있음을 밝혔다. [후략]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 인터뷰_A업체 대표이사 B

최대현안 문제로 떠오른 환경문제. 특히 C면 산업폐기물 매립장(이하 산폐장) 설치를 둘러싸고 행정과 시민, 그리고 사업자 측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이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는 A업체 B 대표이사를 만나 사업자 측의 입장과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1문 1답을 통해 들어 보았다. - 편집자 주 [중략]



Q. A업체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인허가 과정에 대하여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산폐장은 앞서 사업추진경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인허가 과정의 적법성과 행정적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관련법령 등 입법취지를 사전에 숙지하여 어떠한 법령위반도 없이 절차에 의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Q. 사업진행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이 없이 진행되어 사업의 인허가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이야기에 대해?

이와 관련하여, 한 시민단체에서 사업시행사가 주민설명회 명부 등을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사용하였다고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주민설명회 방명록 등을 위조하고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 더구나 사업시행 관련 주민설명회 방명록은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승인과정에 꼭 필요한 서류가 아니어서 위조할 이유가 없다. 현재, 위 고발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정이 난 바 있다.

이와 관련 그 후에, 지역주민들과의 상생발전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면 발전기금 협약식을 ○년 ○월 ○일자로 체결하였다. 아마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기 위해서 ○면 발전기금 협약식을 체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있는데, 앞 뒤 순서를 오해하여 하시는 말씀인 듯하다. [후략]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대표이사를 인터뷰하여 피신청인 발행의 주간신문 ○면에 기사로 게재하되, 아래의 사항은 반드시 해당 기사에 포함되도록 하고 ○년 ○월 ○일 이전까지 이행하기로 한다.
 - 인터뷰는 피신청인 편집국장이 진행함
 - 대표이사의 사진을 게재함
 - 산폐장 설치의 필요성, 산폐장 인허가 과정의 정당성, 조정대상보도에 대한 신청인 회사의 반론
- 위 인터뷰기사의 제목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의 본문이 별도의 창으로 열리도록 한다.

**사례 57****2018서울조정763 손배청구**

신청인의 SNS 내용, 아이디, 닉네임 등을 동의 없이 공개한 보도에 대해 사과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연예전문 인터넷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유명가수 팬사인회를 응모했는데 실수로 다른 가수의 팬사인회 응모함에 잘못 넣어 당첨되었다’는 신청인의 트위터 내용을 언급하면서 해당 가수를 무시해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당시 다른 가수의 팬사인회에 당첨된 것은 팬사인회 응모를 진행한 업체의 실수가 주된 원인이었고, 동의 없이 자신의 트위터를 캡처, 보도하여 트위터 내용과 아이디, 닉네임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피신청인은 보도후 신청인의 정정요구를 받고 조정대상보도를 삭제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였다며 손해배상 대신 사과보도를 게재하겠다고 밝혔고, 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여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 후 보도문**보도내용**

피신청인이 ○년 ○월 ○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사 [] 내용에 대해 피신청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를 게재한 이후 신청인(트위터 아이디 : ○)이 입은 피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위 사과문을 ○년 ○월 ○일 ○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상단(5번째 이내)에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에 따라 이행한 사과문을 전송한다.



사례 58

2018전북조정57·58, 59·60(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재개발조합 내 사문서위조 등 고발사건을 보도하여 중재부의 사실조회에 대한 지자체의 답변을 바탕으로 후속보도를 게재한 사례

보도내용

- 지역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모 재개발조합의 사무국장인 신청인이 본인을 조합원으로 등재하기 위해 모 조합원의 토지를 매수한 후 조합장의 인감을 도용하고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시에 제출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일부 조합원들에 의해 고발되었다는 취지로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보도,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조합의 인감 등은 금고에 보관되어 있고, 사전에 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 서류에 날인하고 원본을 지자체에 제출하는 등 절차상 위조할 수 없다
- 관련법에 따라 땅을 매도한 주민과 공유하여 입주권 1개를 가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입주권을 받아 조합에 해를 끼친 것처럼 보도되어 바로잡는다

조정결과

- 중재부는 신청인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 및 절차의 하자 여부를 지자체에 사실조회하였고,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문서 위조 등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후속보도 게재를 권유했고, 심리 이후 후속보도가 게재되어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

조정대상보도

조합 사무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A지역 재개발 사업에서 온갖 위법행위를 저질러 개인적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가뜰이나 늦어지고 있는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의 신뢰와 공정성마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 A지역 재개발 일부 조합원들에 따르면 이 조합 B 사무국장은 조합원 순번 ○번에 등재된 C씨로부터 ○년 ○월 ○일 ○동 ○-○, ○-○번지를 매수한 후 ○일 이전등기를 마친 뒤 조합원 순번에 본인을 등재시켰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는 1명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대로라면 C씨만 조합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B씨는 ‘조합원변경인가신청서’에 조합장의 인감을 도용하고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시에 제출했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이 나오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해 조합과 시 행정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조합원들은 지번분할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실무자의 지위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사문서 위조혐의로 19일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중략]

조합원 모씨는 “사무장 B씨는 조합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점을 악용해 전 조합장인 D씨 모르게 조합의 직인을 날인한 조합 명의의 조합원변경인가신청서를 전주시에 제출하고 조합원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며 “이를 통해 선거인명부에 올라와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것도 모자라 조합원과 같은 가격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돼 재산상의 상당한 이익을 취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개발조합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청렴과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신뢰가 반드시 요구되는데 B씨의 범죄행위로 인해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면서 “조합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강력한 형사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조합원은 “정보유출로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도 있어 사무장이 조합에 10여년 몸담으면서 조합장 2명이 바뀌는 동안 사무장만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조합 내에서는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조합 사무장 B씨는 “C씨의 토지 4평을 매입해 조합원 명부에 올라간 건 맞지만 공유자로 등재됐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양권을 받거나 선거인명부에 올라간 사실이 없는데다 어떠한 이권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조정신청 후 보도문

A지역 재개발사업에 이 조합 사무국장인 B모씨가 분양자격이 없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는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에 따라 지난 ○월 ○일 [] 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에 따라 “A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국장인 B 모 씨가 조합장 모르게 조합의 직인을 날인한 조합원변경인가신청서를 시에 제출하고 조합원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취득,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B 씨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정비법’상 정비사업시행 구역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정당하게 조합원의 자격 및 공유자로서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에 확인 결과 B씨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 다만, B 씨는 권리산정일 이후에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분양신청을 했더라도 땅을 매도한 C씨와 공유로 1개의 입주권(분양권)만을 갖게 되며 개별적 입주권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다. 또, B씨는 조합장 직인 도용 의혹에 대해서도 “조합장 직인은 이사회와 대의원 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 서류에 날인을 하고 원본을 시에 제출하기 때문에 위조돼 제출될 수 없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인감 도용과 허위 서류제출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에 충분히 해명했다.



사례 59

2018서울조정1599 손해청구

기상보도에서 신청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사용, 향후 포털사이트, SNS, 카페 등에 신청인의 사진이 전파될 경우 열람·검색 차단에 협조하기로 한 사례

보도내용

- 뉴스통신사인 피신청인은 사상 최악의 폭염이 닥쳐 ‘양산 남성족’이 등장했다며 폭염에 양산을 쓴 신청인의 사진을 4차례에 걸쳐 보도하였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동의 없이 초상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피신청인은 조정신청 이후 신청인의 사진을 이미 내렸거나 다른 사진으로 교체하였다며 신청인에게 유감의 뜻을 전했고, 포털사이트나 SNS, 카페 등에 전파될 경우 사진의 열람·검색 차단에 협조하기로 양 당사자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사례 60

2018경기조정127·128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아들의 병역기피 관련 의혹제기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와 함께 기자 개인 블로그, SNS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의 열람·검색을 차단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지역 인터넷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지자체 의원인 신청인의 아들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서 고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신청인의 아들이 13세에 타국 국적을 취득하여 즉시 자국 국적이 상실되었고, 이중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으며, 병역의무시기와는 관계가 없다며 정정보도와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A 의원의 아들은 ○년 ○월 ○일 ○에서 출생한 후 그 곳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며 거주하다가 만 13세 무렵인 ○년 ○월 ○일 자진하여 타국의 국적을 취득하였고 이로써 그 때부터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을 뿐, 타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 모두를 보유하고 있다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시기에 한국 국적을 이탈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는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기자 개인 블로그와 SNS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의 열람·검색을 차단하기로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본보는 ○년 ○월 ○일 ○면 [] 제목의 기사에서 A 의원의 아들이 이중국적을 보유하다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병역판정검사연기를 한 후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년



○월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A 의원의 아들은 B국에서 출생한 후 대한민국 국적만을 보유하다가 만 13세인 ○년 ○월 ○일 B국 국적을 자진 취득하여 「국적법」에 따라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을 뿐, 이중국적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기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 홈페이지 ○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48시간 동안은 주요뉴스목록 상위 5번째 이내에 나타내게 한다.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활자 크기와 같게 하여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작성된 위 보도문이 나오게 한다. 48시간 게재 완료 이후에도 위 보도문을 ○면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조정대상보도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한,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하고, <A언론>과 <B협회> 등에 전재된 조정대상보도의 열람 및 노출을 차단하여 검색되지 않도록 한다.



사례 61

2018충북조정45, 46(병합) 각 정정청구

학교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신청인의 입장을 담은 후속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지역일간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신청인 학교재단이 운영하는 중학교가 교장 선임방식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총동문회 등이 이사장의 독단적인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고 보도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학교 관계 단체의 성명서를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초빙교장을 외부에서 내정하여 임용하려 하였으나 학교 관련 단체의 반대를 수용하여 이사회는 교장공모제로 임용방법을 변경하는 안을 의결하였음
- 후원금, 기부금 모금은 학생수 감소로 인한 위기에서 학교발전을 위한 학교장의 여러 대외활동을 강조하는 도중 예시로 한 발언이며, 외부의 지원, 후원을 받아 학교를 발전시키는 것은 교장의 중요한 활동임
- 기부, 후원금은 학생의 장학금, 교육활동지원, 교육시설개선 등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절대 이사장의 사적 유용은 없을 것임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신청인이 조정대상보도에 대해 후속보도를 요구하자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A중학교가 교장 선임문제로 재단과 이해단체 간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총동문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학교관련 이해단체가 이사장의 독단적인 학교 재단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이사장이 공모제 교장을 선임하려는 시도는 문제점이 많다”며 “투명한 공모를 통해 능력 있고 활동적인 인사를 초빙교장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사장은 교장이 학교에 있을 이유가 없고 외부 활동을 통해 기업체로 부터 후원, 학교 기부금을 모금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발언을 했다”며 “전교 학생 수가 130명 되는 학교에서 무슨 기업체 후원금이 필요하고 도대체 그 돈을 어디에 쓸려고 하는 지 의구심이 든다”고 반발하고 있다. [중략]

이들 단체는 “A중학교는 재단에서 설립했지만 50년 동안 배출한 동문들 그리고 재학생들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은 교장을 선임하는 데에 있어서 절대로 학교 발전을 저해 하는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되고, 만일이라도 독단적 행동으로 모든 일을 강행한다면 동문회와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학부모회는 절대로 간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후략]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속보=학교법인 B학원 A중학교는 ○일 “교장 및 학교 관련 단체는 교장을 공모제로 임용하자는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A중은 이날 “C군의 명문사학으로 이사장은 절대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 ○월 ○일 이사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교장공모제로 임용방법을 변경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장공모제에 대해 1대1 간담회가 진행 중”이라며 “이는 재단이 이미 교육 구성원과 상호 소통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해 독단적 운영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A중은 “후원금과 기부금 모금은 학부모회원, 학교운영위원들과 이사장이 토론 과정에서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당장의 위기에서 학교발전을 위한 학교장의 여러 대외활동을 강조하는 도중 예시로 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의 유능한 총장이 후원금 및 기부금을 받아 학생들의 장학금 및 복지를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교장들도 대외활동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장은 “기부, 후원금은 모두 A중 학생들의 장학금 및 교육활동지원, 교육시설개선 등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보도방법

- ○년 ○월 ○일까지 ○면에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주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하며,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 ○년 ○월 ○일까지 피신청인 인터넷 홈페이지 ○섹션 초기화면 기사목록에 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상시 검색되도록 하고,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해 검색되도록 한다. 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보도와 동일하게 게재한다.



사례 62

2018서울조정1698, 1699(병합) 각 정정청구

성폭력 관련 보도에 대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SNS 등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의 열람·검색을 차단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종합일간신문사인 피신청인 1은 공기업 산하기관 직원인 신청인이 용역 업체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해왔다는 취지로 보도하였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포털사이트) 피신청인 2는 해당 보도를 매개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치마속 촬영 시도 등의 행위는 있었으나 보도에 언급된 것처럼 나체 사진을 수시로 보낸다거나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의 사실은 없었는데도 피해사실이 과장 보도됨으로써 부정적인 댓글 등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지속적인 성폭력 행위나 추행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님이 밝혀져 바로잡는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신청인은 피신청인 1,2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및 피신청인 1 계정의 SNS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의 열람·검색차단 조치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피신청인들이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검색이 차단되었으므로 수록하지 않음



사례 63

2018경남조정48·49 정정·손배청구

폐간된 언론사의 전통 계승과 관련, 신청인 언론사 대표의 기고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인터넷신문사인 피신청인은 신청인 언론사가 옛 A신문의 전통을 계승하겠다고 표명했으나 이는 역사 왜곡이라는 취지의 옛 A신문 출신 기자들이 제공한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의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이미 이 건에 대한 신청인의 입장문을 게시했고, 피신청인 언론사와 통화하여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고 편파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중재부는 신청인 언론사의 기고문을 게재하는 안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A신문 출신 언론인 일동은 29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B신문이 A신문의 30년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고 한 것에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A신문 관계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B신문이 창간 1주년 기념식 관련 기사에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A신문의 정신을 이어받아 창간했다’고 표현한 점과 B신문 제호 아래 ‘30년 전통을 이어가는 지역신문’이라는 문구를 넣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B신문이 A신문을 계승하고 있다는 표현 등에 “어이없고 황당하다 못해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며 “결론적으로 말해 B신문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역사왜곡이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B신문의 구성원은 ○년 시민주 공모로 창간한 A신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그들은 그 흔한 1만 원 짜리 주식 한 장 가져본 적 없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그들이 ‘A신문의 전통을 이어받아 정론직필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신문 지면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단체장과 유력 정치인들 얼굴 알리기에 치중하는 듯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B신문의 일반 기사들이 대체로 베껴쓰기나 받아쓰기로 일관한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특히 “B신문의 고 A신문 대표 관련 기사는 타 언론사에 실린 인터뷰와 A신문에서 일했던 기자의 칼럼을 그대로 가져와 짜깁기해서 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지적하자 아무런 사과와 설명 없이 베껴 쓴 부분을 지우고 고쳤다”고 설명했다. [후략]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 <기고문> 현 B신문 논란에 대한 답변

-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기고문입니다.

B신문은 지난해 6월 ○도로부터 제호를 합법적인 절차로 등록, 지면과 인터넷 신문을 함께 하고 있는 언론사로서 지난 8월 창간 1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지역 언론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역할을 다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다하고 있다. [중략]

그러나 지난 8월 27일 A신문 출신인으로부터 B신문의 ‘30년 전통’이라는 시사를 사용하지 마라는 항의와 함께 A신문 주식 유무를 언급하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면서 오해와 사건은 시작됐다.

이날 통화에서 B신문은 “C시의 전통과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폐간된 대표 신문인 A신문의 전통을 알리고 그 정신을 이어가고자 한 목적으로 ‘30년 전통’이란 사시를 사용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뜻을 충분히 전했다.

하지만 이미 색안경을 끼고 B신문을 바라본 A신문 출신인 중 1명은 개인 페이스북에 ‘30년 전통’에 대한 글과 B신문의 기사를 함께 기재, 이 게시물에 대한 누리꾼들의 댓글을 유도했다. B신문은 사실에 맞지도 않은 일부 악성 댓글에 시달려야만 했다.

B신문은 악플로 인해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당일 입장문을 기재하고, 홈페이지의 사시를 수정



했다. [중략]

만약 B신문이 ‘30년 전통을 이어 가겠다’ 는 표현을 상업적, 영업적, 의도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B신문의 지난 ○월 진행된 창간 1주년 행사가 창간 31주년으로 행사가 진행됐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B신문은 경남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오해의 소지와 문제점을 원만히 해결하고, 이후 개인적 감정에 치우치는 매개체가 아닌 지역 언론사로서, 또 언론 선후배로서, 지역인으로서 상부상조하고자 한다. B신문은 지역신문의 자리를 넘어 ‘약간 더 나은 신문’이 아니라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전혀 다른 신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면 신문에 광고를 대신해 생활주변 소식과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한 건이라도 더 전하고 변함없이 시민 곁에서 진솔한 소리를 귀담아 듣고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역민들의 사랑과 신뢰 속에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지역 언론으로 정론 직필의 자세를 견지해 갈 것이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지난 ○월 ○일자 홈페이지에 실린 B신문 관련 기사와 관련해 신청인 측의 반박, 해명 등을 담은 기고문을 ○년 ○월 ○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분량은 1500자 이내로 하고 제목, 게재 위치 등은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검토에 이의없이 따르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기고문을 자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또한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도 기고문(제목과 본문 포함)을 삽입하도록 한다.



사례 64

2018서울조정1881 정정청구

반론보도와 함께 조정대상 프로그램의 유튜브 채널에도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 지상파방송사인 피신청인은 모 협회장 여동생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신청인 회사가 해당 협회 인테리어 공사를 도맡아 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는 취지로 방송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하였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협회장 여동생이 소유한 지분과 협회 공사로 얻은 수익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협회장의 여동생은 해당 회사의 지분을 ○% 가지고 있을 뿐이고, 신청인 업체는 전체 인테리어 공사 금액 중 원청업체로부터 1억 6천만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재하청받은 것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는다

조정결과

- 조정심리 중 중재부는 신청인 측 반론을 신는 방안을 양 당사자에게 권유했고, 방송 및 온라인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에 대해서도 반론을 게재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 ▶ 앵커 : A회장이 선택한 첫 번째 사업은 다른 아닌 ○회관의 리모델링 공사였다고 합니다.
[중략]
- ▶ 앵커 : 협회예산으로 공사를 진행한 곳이 다른 아닌 A회장과 관련된 회사라는 것. 이는 과연 사실일까?> 작년 초부터 ○산업개발은 총수일가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특수관계로 지목된 것은 한 인테리어업체. A회장의 여동생 B씨가 주주로 있는 업체였습



니다. 취재진은 해당 인테리어업체에 인테리어 홈페이지를 검색해봤습니다. B씨의 오빠 A회장의 ○산업개발 사옥과 A씨의 아버지를 기리는 ○재단의 인테리어공사에 참여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문으로 떠돌던 의혹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 A회장 취임 직후 진행된 ○협회 리모델링 공사 역시 이곳에서 참여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해당업체가 진행한 모델하우스 상당부분도 ○산업개발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진 대부분이 오빠인 A회장, 그리고 ○그룹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당업체의 기업신용분석보고서를 입수해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2014년 기준 해당업체의 지분 ○%를 보유한 B씨. 경영실권자가 본인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또다른 보고서 역시 A회장의 여동생인 B씨를 경영실권자로 꼽습니다. 거래 99.9%를 ○산업개발과 했다는 내용도 눈에 띄입니다. [중략]

- ▶ 앵커 : ○협회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된 2013년 해당업체의 재무 상태는 어땠을까? 그런데 전년도와 매출액이 비슷한 2013년 이례적으로 약 54억원의 현금수익을 올린 것이 눈에 띄입니다. 전년에 비해 약 25배 늘었다는 겁니다. [중략]
- ▶ 앵커 : 인테리어업체가 큰돈을 번 2013년은 주주 B씨의 오빠가 회장으로 있던 ○협회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던 해입니다. 그저 우연인 걸까요? [후략]

조정성립 후 보도문

보도내용

지난 ○월 ○일 []에서는 ‘○협회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 2013년 ○협회장인 A회장의 여동생 B씨가 ○%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인테리어 업체가 ○협회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했고, 2013년 한 해 동안 54억원의 현금수익을 올렸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으나, 당시 B씨의 해당 회사 지분율은 ○%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는 ○협회 인테리어 전체 공사금액 11억 9만원 중 1억 6천만원의 재하청을 받았을 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고방법

- 피신청인 홈페이지 [] 프로그램의 []면의 초기화면 상단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고정으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 홈페이지 [] 프로그램 다시보기면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게재한다.
- 유튜브에 게시된 [] 프로그램의 조정대상보도 다시보기면 하단에도 위 보도문을 게재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사례 65

2018서울조정2230~2232, 2236, 2294, 2298 각 손배청구

자발적으로 공개 SNS 계정에 게시한 사진을 인용한 보도는 집회나 시위에 참여한 사람의 초상을 보도한 것과 유사하다고 보고 기각한 사례

보도내용

- 인터넷신문인 피신청인은 SNS에서 여성들이 짧은 헤어스타일을 공개하면서 해시태그를 붙이는 ‘탈코르셋’ 열풍이 불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신청취지

-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SNS 계정에 올린 사진을 피신청인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해시태그 운동의 의미가 퇴색하고 대중에게 조롱을 받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조정결과

- 중재부는 신청인들이 탈 코르셋 운동에 참여의사를 밝히며 자발적으로 다수에게 공개된 SNS에 게시한 사진을 인용한 보도는 집회나 시위에 참여한 사람의 초상을 보도한 것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고, 신청인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조정대상보도

이수역 폭행사건 이후 자신의 짧은 헤어스타일을 공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새 200명 가까운 여성들이 짧은 머리카락을 인증하며 이른바 ‘탈코르셋’ 행렬에 나선 상태다.

○일 ○시 ○분 현재 SNS 인스타그램에서는 ‘#내가_탈코르다’라는 해시태그로 총 190건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해당 SNS 이용자들은 전날 이수역 폭행사건이 논란의 중심에 떠오른 뒤 틀에 박힌 여성성을 규정하는 사회적 시선을 탈피하고자 해시태그를 전파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

이수역 폭행사건이 단초가 된 이 운동은 사건의 진실공방과 별개로 페미니즘 진영의 ‘숏컷’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모양새다. 관련해 참여자들은 “머리가 짧아도 나는 여성” “더이상 눈요깃거리로 살지 않는다”라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수역 폭행사건은 지난 13일 새벽 서울 지하철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발생했다. 남성 3명과 여성 2명이 시비를 벌이다 싸워 여성 1명이 머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다툼이 남녀 간 혐오 감정으로 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8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